

교원의 임용

1 임용일반

가. 임용

1) 관련 규정

가) 공무원의 구분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가)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나)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나)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특정직공무원: 공립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나) 정의(교육공무원법 제2조)

(1)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나)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다)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